

울산지방법원 2022. 4. 29 선고 2021가단8308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2. 3. 25.

판 결 선 고 2022. 4. 29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중구 C 전 699㎡ 중 ①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㉠ 부분 지상 이동식 화장실 약 1.0㎡, ② 같은 도면 표시 5, 6, 7, 8,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㉡ 부분 지상 판넬조 판넬지붕 창고 약 2.5㎡, ③ 같은 도면 표시 9, 10, 14, 17, 11, 12, 13, 21, 20,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㉢ 부분 지상 조적조 슬레이트 지붕 주택 약 33.75㎡, ④ 같은 도면 표시 14, 15, 16, 17,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㉣ 부분 지상 목조 슬레이트 지붕 창고 약 15.96㎡, ⑤ 같은 도면 표시 11, 12, 19, 18,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㉤ 부분 지상 목조 슬레이트 지붕 가차 약 12.35㎡, ⑥ 같은 도면 표시 20, 21, 22, 23,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㉥ 부분 지상 파이프조 간이창고 약 4.0㎡를 각 철거하고, 위 각 토지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갑 제1,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인 울산 중구 C 전 699㎡ 위에, ①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㉠ 부분 지상 이동식 화장실 약 1.0㎡, ② 같은 도면 표시 5, 6, 7, 8,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㉡ 부분 지상 판넬조 판넬지붕 창고 약 2.5㎡, ③ 같은 도면 표시 9, 10, 14, 17, 11, 12, 13, 21, 20,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㉢ 부분 지상 조적조 슬레이트 지붕 주택 약 33.75㎡, ④ 같은 도면 표시 14, 15, 16, 17,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㉣ 부분 지상 목조 슬레이트 지붕 창고 약 15.96㎡, ⑤ 같은 도면 표시 11, 12, 19, 18,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㉤ 부분 지상 목조 슬레이트 지붕 가차 약 12.35㎡, ⑥ 같은 도면 표시 20, 21, 22, 23,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㉥ 부분 지상 파이프조 간이창고 약 4.0㎡를 각 소유하면서, 위 각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.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원고에게 위 ① ㉠ 부분 지상 이동식 화장실 약 1.0㎡, ② ㉡ 부분 지상 판넬조 판넬지붕 창고 약 2.5㎡, ③ ㉢ 부분 지상 조적조 슬레이트 지붕 주택 약 33.75㎡, ④ ㉣ 부분 지상 목조 슬레이트 지붕 창고 약 15.96㎡, ⑤ ㉤ 부분 지상 목조 슬레이트 지붕 가차 약 12.35㎡, ⑥ ㉥ 부분 지상 파이프조 간이창고 약 4.0㎡를 각 철거하고, 위 각 건물 내지는 건조물의 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태홍

별지